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3월 10일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1월 9일

나. 발 의 자: 김희동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3. 7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희동 의원)

□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구민에 대한 봉사과 치안 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재향경우회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라.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규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, 제15조
- 나. 협조부서: 자치행정과
- 다. 입법예고(2023. 1. 13. ~ 2023. 1. 25.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임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1조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2조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의 뜻을 정의함
-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

-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재향경우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고,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함
- 안 제6조는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협력 등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,
-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

제5조(조직)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·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

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·도회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

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.

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

제15조(재정)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